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년 4월 1일

나. 발 의 자 : 최봉희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20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0. 5.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안 제6조 ~ 제7조)

-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원요청(안 제8조 ~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임선영)

-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제9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관기관의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최근 지역행사장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등 각각의 개별법령에 따라 공연 등 행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규모 행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일

발의자 : 최봉희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다.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안 제6조 ~ 제7조)
- 라. 안전관리요원 배치, 지원요청(안 제8조 ~ 제9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0. 2. 20. ~ 2. 24.)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인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등 행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 하는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